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제1호(통권 제78호(2019년 3월)) pp.209~236  
 한국공인회계사회

# 유효법인세율과 순확정급여부채

이명곤\* / 인창열\*\*

- |                      |            |
|----------------------|------------|
| I. 서론                | IV. 실증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V. 결론      |
| III.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            |

## 개요

본 연구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순확정급여부채를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경영자는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는 유인을 가진다. 또한 경영자는 법인세 부담이 클 경우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도 있다. 그러나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정합성으로 인해 회계이익의 증가 및 법인세비용의 감소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 다만, 세법에서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준비금, 충당금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회계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위해 납부하는 적립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경영자가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르면 경영자는 매년 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예측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는 종업원에 대한 채무인 확정급여채무와 퇴직급여를 위해 적립한 자산인 사외적립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며, 순확정급여부채(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값)를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영자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증가시킨다면 사외적립자산이 증가하여 순확정급여부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 대비 증가액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본 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적립

\* 제1저자,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leemg@hanyang.ac.kr)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E-mail: rebierth@hanyang.ac.kr)

투고일(2018년 10월 8일), 수정일(2019년 1월 8일), 게재확정일(2019년 1월 16일)

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세무전략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유효법인세율, 순확정급여부채, 법인세비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유효법인세율과 순확정급여부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순확정급여부채를 공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경영자는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상과 관련된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유인을 가진다(Healy 1985; 김창범 등 2007). 단,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정합성이 높은 국내의 제도적 환경에서 상향이익조정은 법인세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회계이익의 증가와 법인세비용의 감소 중에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고윤성(2008)에 따르면 법인세비용은 다양한 항목들에 의해 조정된다. 이때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세무이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준비금, 충당금 세액감면 등의 제도가 세법에 존재한다. 즉, 경영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면 회계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법인세비용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한 경영자는 매년 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예측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는 종업원에 대한 채무(확정급여채무)에서 기업이 적립한 자산(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값을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책임준비금의 60%를 최소적립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는 최소적립금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향후 납부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한편 세법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은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적립금은 회계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세무이익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적립금이 법인세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영자는 법인세의 부담이 높을 경우 법인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고윤성 등 2007; 심상규와 김지범 2008). 이때 경영자는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이용하여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경영자가 법인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적립금을 납부한다면 확정급여채무의 증가분보다 사외적립자산의 증가분이 더 클 것이다. 이는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고윤성 등(2007) 및 박종일과 김경호(2002)에 따르면 당기법인세율이 기업의 법인세절감을 위한 의사결정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법인세부담은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한 전기법인세율이 더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전기법인세율이 높을 경우 법인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적립금을 납부한다면 순확정급여부채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전기유효법인세율과 순확정급여부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대비 증가액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본 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세무전략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가설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또는 그 이후에 회사가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을 말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K-IFRS) 하에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된다.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주관하여 적립금을 운영하고 퇴직시점에 종업원에게 적립금과 적립금의 운영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1항).<sup>1)</sup>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은 일정한 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납부하면 그 책임이 종료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없다. 회계처리도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에 납부한 적립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확정기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납부한 적립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3항).<sup>2)</sup>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는 퇴직급여가 종업원의 최종임금과 근무기간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기업이 미리 결정된 퇴직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확정급여제도에서도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1항).<sup>3)</sup> 그러나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약정한 금액을 퇴직시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모두 부담한다. 이에 기업은 미래 퇴직급여의무인 확정급여채무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사외적립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며,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를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한 적립금이 많을수록 사외적립자산이 증가하여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의 100%까지 손금산입받을 수 있도록 퇴직급여를 위해 납부한 적립금에 대하여 일정하고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4항).<sup>4)</sup>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③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④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인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 2. 선행연구

퇴직급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사례를 통한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유인을 살펴본 연구, 퇴직급여와 관련된 경영자의 재량권을 살펴본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경영자의 재량권을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재량권에 초점을 두고 경영자가 보험수리적 가정을 재량적으로 선택하여 재무정보를 조정하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Hsu et al.(2013)은 부채비율과 소유구조에 따라 경영자가 할인율과 기대수익률을 재량적으로 선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질수록 기대수익률의 증가를 통해 사외적립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alah and Smaoui(2014)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재량적 선택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An et al.(2014)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를 달성한 기업에서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정연과 안일준(2010)은 실제 수치를 적용하여 보험수리적 가정의 재량적 선택으로 이익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연(2014)은 4분기 회계정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한 이익조정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김정연(2014)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의심기업과 퇴직급여부채의 변동이 큰 기업 간에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국내에서 퇴직급여부채의 변화를 통한 이익조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윤상규 등(2014)도 보험수리적 가정들의 재량적 변동가능성과 동기를 연구하였으나, 경영자가 보험수리적 가정을 재량적으로 선택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영란 등(2016)은 부채비율 및 적자회피가 기대임금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채비율 및 적자회피와 기대임금상승률 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적자회피기업일수록 기대임금상승률을 감소시켜 퇴직급여관련 부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이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재량적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는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법인세절감 목적으로 이용하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정연(2014)은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립금의 규모 증가가 법인세절감 목적일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법인세절감보다 이익조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인세비용에 따른 경영자들의 선택을 살펴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법인세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경영자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Mande et al. 2000; 고윤성과 이진훤 2011; 김문태와 조인선 2006; 백원선과 최관 1999; 위준복과 김문태 2005). 그러나 법인세부담이 높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 이익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심충진과 권해숙 2017). 한편 선행연구들은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Comprix et al. 2012; Dhaliwal et al. 2004; 박종일과 전규안 2009).

백원선과 최관(1999)은 경영자가 법인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경영자는 이익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법인세 추가부담이라는 비용을 고려하여 경영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분석결과는 경영자가 법인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할 경우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부담을 감소시켜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하는 것이 경영자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준복과 김문태(2005)는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익조정 of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이연법인세부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조정하여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및 이연법인세부채가 감소하였다.

Mande et al.(2000)은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영업성과가 양호할수록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익 및 법인세비용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였다. 김문태와 조인선(2006)은 연구개발비의 비용화와 법인세비용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전법인세부담이 높을 경우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전년 대비 이익이 증가한 집단에서 사전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하였으며, 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용화가 증가하였다. 최원욱 등(2010)은 퇴직보험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절세성향 및 기업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퇴직보험을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절세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퇴직보험 가입 시 주어지는 조세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보유현금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퇴직보험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내철과 박성환(2007)은 수익성이 높을수록 조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보수주의 성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조세부담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고운성과 이진훤(2011)은 재무보고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세무보고비용을 감소시키는 세무전략을 통해 법인세비용을 낮추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법상 손금산입의 한도가 있는 접대비를 손금산입의 한도가 없는 복리후생비 또는 기타판매관리비로 대체하면서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접대비의 변동율은 복리후생비의 변동율 및 기타판매관리비의 변동율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성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가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추정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심충진과 권해숙(2017)은 유효법인세율과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세전이익에 대한 수익비용대응 수준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나 세전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비용까지 경영자가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수익비용대응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Dhaliwal et al.(2004)은 3분기에 재무분석가의 예측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이 4분기에 법인세비용을 감소시켜 유효법인세율을 낮추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효법인세율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종일과 전규안(2009)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비용을 마지막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목표이익에 미달한 기업은 3분기까지의 유효법인세율보다 4분기의 유효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법인세비용을 낮추고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prix et al.(2012)은 3분기 이전에 유효법인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4분기의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음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을 모두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법인세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회계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세무이익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법인세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보상이 회계이익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는 회계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세무이익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선호할 것이다.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에서 납부하는 적립금은 회계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세무이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납부하는 적립금은 회계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법인세부담이 클 경우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을 활용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Ⅲ.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선행연구들은 법인세부담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켜 법인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증거를 다수 보이고 있다(Mande et al. 2000; 백원선과 최관 1999; 위준복과 김문태 2005). 법인세비용이 감소하면 현금유출이 감소하므로 현금흐름이 양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정합성으로 인해 법인세비용의 감소는 회계이익의 감소를 동반한다. 경영자 보상이 회계이익에 연계된다는 점에서 경영자는 회계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회계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단을 선호할 것이다. 국내 세법에서 준비금, 충당금, 세액감면 등의 제도는 회계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해준다. Mande et al.(2000) 및 김문태와 조인선(2006)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한다고 보고한다. 고윤성과 이진원(2011)은 법인세비용을 완화하는데 있어 재무보고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손금산입의 한도가 있는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또는 기타판매관리비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은 선택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매년 일정한 금액이상의 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기여제도 하에서 납부한 적립금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며, 전액 손금으로 산입한다. 즉, 확정기여제도를 선택한 기업은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활용하여 법인세비용을 줄이고자 할 경우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이 모두 감소하게 된다. 반면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납부한 적립금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확정급여제도를 선택한 기업은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이용하여 회계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법인세비용만을 감소시킬 수 있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은 지출해야 하는 법인세비용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법인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영자는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경영자는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증가시킴으로써 회계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기업은 미래 퇴직급여의무인 확정급여채무와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입한 적립금인 사외적립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더불어 기업은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값을 순확정급여부채로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립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클수록 사외적립



자산이 증가하여 순확정급여부채는 감소할 것이다.<sup>5)</sup> 선행연구는 당기법인세율이 기업의 법인세절감을 위한 의사결정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법인세부담의 대응치로 전기법인세율이 더 타당하다고 말한다(고윤성 등 2007; 박종일과 김경호 2002). 이러한 논리에 따라 본 연구는 법인세부담이 높을 경우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사용하여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 전기유효법인세율과 순확정급여부채는 음(-)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전기유효법인세율과 순확정급여부채 간에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 (1)을 설정한다. 선행연구들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이익으로 나누어 측정된 유효법인세율과 법인세납부액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나누어 측정된 유효법인세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강정연과 고종권 2014, 고종권과 박희진 2017; 김정교 1984; 김진희 2014; 박종일과 전규안 2009; 최동춘과 서정록 2013).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이익으로 나누는 방법(GETR)과 법인세납부액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나누어 방법(CETR)을 사용하여 유효법인세율(ETR)을 측정한다.<sup>6)</sup>

5)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의 규모는 순확정급여부채의 가장 큰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많이 납부하여 사외적립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순확정급여부채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포스코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적게 납부하였고, 이로 인해 순확정급여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자가 법인세절감을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많이 납부한다면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할 것이고 반대로 적립금을 적게 납부한다면 순확정급여부채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구분	현대자동차			포스코		
	2016년	2017년	증가액	2016년	2017년	증가액
순확정급여부채	361,368	61,747	-299,621	-81,621	43	81,664
확정급여채무	4,113,885	4,484,665	370,780	1,065,255	1,108,876	43,621
사외적립자산	3,752,517	4,422,918	670,401	1,146,876	1,108,833	-38,043
퇴직급여 적립금	505,000	725,800	220,800	198,439	49,963	-148,476

6)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퇴직급여 적립금의 사용은 결산 전에 추정된 법인세비용을 확인한 이후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정된 법인세비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법인세부담의 대응치로 당기법인세율보다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된 전기법인세율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한다(고윤성 등 2007; 박종일과 김경호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당기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한 분석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egin{aligned}
 PEN_t = & \alpha_0 + \alpha_1 ETR_{t-1} + \alpha_2 SIZE_t + \alpha_3 LEV_t + \alpha_4 OA_t + \alpha_5 CFO_t + \alpha_6 LIQ_t \\
 & + \alpha_7 BIG4_t + \alpha_8 DIV_t + \alpha_9 AGE_t + \alpha_{10} OWN_t + \alpha_{11} FOR_t + \alpha_{12} BOARD_t \\
 & + \alpha_{13} EMP_t + \alpha_{14} SALARY_t + \alpha_{15} MK_t + \sum YR + \sum IND + \varepsilon
 \end{aligned}$$

연구모형 (1)

<i>PEN</i>	: 순확정급여부채(=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총자산
<i>ETR</i>	: 유효법인세율
<i>GETR</i>	: 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이익
<i>CETR</i>	: 법인세납부액/영업활동현금흐름
<i>SIZE</i>	: log(매출액)
<i>LEV</i>	: 부채/총자산
<i>OA</i>	: 영업이익/총자산
<i>CFO</i>	: 영업현금흐름/총자산
<i>LIQ</i>	: 유동자산/유동부채
<i>BIG4</i>	: BIG4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i>DIV</i>	: 현금배당율
<i>AGE</i>	: log(상장일 이후 일수)
<i>OWN</i>	: 대주주지분율
<i>FOR</i>	: 외국인지분율
<i>BOARD</i>	: log(임원 1인당 평균지급액)
<i>EMP</i>	: log(종업원 수)
<i>SALARY</i>	: log(종업원 1인당 평균급여)
<i>MK</i>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면 1,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면 0

연구모형 (1)에서 종속변수는 순확정급여부채를 의미하는 *PEN*이며, 관심변수는 유효법인세율을 나타내는 *ETR*이다. 순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값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된다(Franzoni and Marin 2006; Wang and Zhang 2014; 김상헌 2015; 조석희 2014).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법인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납부금이 증가한다면 순확정급여부채는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ETR*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면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 (1)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Almeida et al. 2004; Han and Qui 2007; Salah and Smaoui 2014; 김상헌 2015). *SIZE*는 기업규모 및 다양한 생략변수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므로 연구모형에 포함된다. 선행연구는 재무적으로 제약이 있을수록 현금보유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한다(Almeida et al. 2004; Han and Qui 2007). 이에 따라 재무적으로 제약이 있는 기업일수록 적립금을 적게 납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는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LEV*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수익성이 낮을수록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의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므로, 본 연구는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OA*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또한 영업현금흐름 및 유동성이 양호한 기업의 경우 미래의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영업현금흐름 및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것은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립금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내는 *CFO*와 유동성을 나타내는 *LIQ*는 영업현금흐름과 유동성이 미치는 영

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포함된다.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감사품질은 순확정급여부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상현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감사인규모를 나타내는 BIG4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현금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보유를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납부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현금배당율을 의미하는 DIV를 연구모형에 포함한다. 상장기간을 의미하는 AGE는 상장기간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포함된다. 대주주지분율(OWN) 및 외국인지분율(FOR)은 기업지배구조가 퇴직급여부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상현(2015)의 연구에 따라 통제변수로 포함된다.

김상현(2015)는 이사회 및 종업원 관련 변수가 퇴직급여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사회와 종업원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임원 1인당 평균지급액을 나타내는 BOARD, 종업원 수를 나타내는 EMP, 종업원 1인당 평균급여를 나타내는 SALARY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sup>7)</sup> 그리고 상장시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상장시장을 의미하는 MK를 통제변수로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연도별에 따른 차이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도더미(YR)와 산업더미(IND)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 3. 표본선정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분석기간을 2012년부터 2017년으로 설정한다. 이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결산일이 12월말이 아닌 기업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
3. 법인세차감전이익 또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인 기업
4.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를 측정할 수 없는 기업

본 연구는 결산일에 따른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결산일이 12월말이 아닌 기업을 제외한다.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은 퇴직급여 관련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다른 퇴직연금제도

7) 임원은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를 말한다.

를 함께 운용하는 기업도 표본에 포함된다.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함에 있어 분모인 법인세차감 전이익이 음(-)인 경우와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인 경우 유효법인세율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인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된다(최동춘과 서정록 2013).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자본이 음(-)인 기업 및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를 측정할 수 없는 기업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는 표본 수는 총 3,939개이다. 분석에 사용되는 재무자료들은 KIS-VALUE와 TS2000에서 입수한다. <표 1>은 표본선정과정을 보여준다.

〈표 1〉 표본선정과정

표본선정기준	표본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	12,962	2,135	2,120	2,139	2,175	2,195	2,198
결산일이 12월말이 아닌 기업	(2,900)	(646)	(584)	(532)	(451)	(383)	(304)
확정급여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	(1,848)	(231)	(253)	(277)	(318)	(369)	(400)
법인세차감전이익 또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인 기업	(3,102)	(472)	(472)	(498)	(503)	(533)	(624)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1,173)	(198)	(177)	(187)	(222)	(209)	(180)
최종표본	3,939	588	634	645	681	701	690

#### IV. 실증분석결과

#####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한다. 본 연구는 극단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변수들의 상위 1%와 하위 1%를 각각 상위 1%의 값과 하위 1%의 값으로 조정하여 분석한다. 또한 유효법인세율(GETR, CETR)이 음(-)의 값이거나 1보다 큰 값으로 나타날 경우 논리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석상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따라 GETR 및 CETR이 0보다 작으면 0, 1보다 크면 1의 값으로 조정한다(강정연과 고종권 2014, 고종권과 박희진 2017).

<표 2>를 살펴보면 순확정급여부채를 나타내는 PEN은 평균(중위수)이 0.0159(0.0084)의 값을 보임으로써 순확정급여부채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약 1.59%임을 나타낸다. 유효법인세율을 나타내는 GETR과 CETR의 평균은 각각 0.2042와 0.2350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는 평균이 25.9761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LEV는 평균이 0.3376임을 알 수 있다.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OA는 평균과 중위수가 각각 0.0665와

0.0544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내는 CFO는 평균과 중위수가 각각 0.0829와 0.0712의 값을 보이고 있다.

유동비율을 의미하는 LIQ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2.9760과 1.7750의 값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규모를 나타내는 BIG4는 평균이 0.6131의 값을 보임으로써 전체표본 중 약 61.31%가 BIG4 감사인에게 감사받았음을 나타낸다. 현금배당율을 의미하는 DIV는 평균이 0.3946의 값을 보이고 있다. 상장기간을 의미하는 AGE의 평균은 8.2813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주주 지분율(OWN)과 외국인지분율(FOR)의 평균은 각각 0.4438과 0.0957임을 알 수 있다. 상장시장을 의미하는 MK의 평균은 0.4910의 값으로 나타남으로써 분석표본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약 49.10%임을 의미한다.

〈표 2〉 기술통계량(n=3,939)

변수	MEAN	STD	MIN	P25	P50	P75	MAX
<i>PEN</i>	0.0159	0.0210	-0.0097	0.0026	0.0084	0.0206	0.1174
<i>GETR</i>	0.2042	0.1411	0.0000	0.1406	0.2066	0.2447	1.0000
<i>CETR</i>	0.2350	0.2563	0.0000	0.0575	0.1556	0.3067	1.0000
<i>SIZE</i>	25.9761	1.5262	22.1954	24.9192	25.7684	26.8365	30.8835
<i>LEV</i>	0.3376	0.1725	0.0136	0.1964	0.3303	0.4701	0.7514
<i>OA</i>	0.0665	0.0500	-0.0153	0.0304	0.0544	0.0903	0.2489
<i>CFO</i>	0.0829	0.0571	0.0030	0.0402	0.0712	0.1129	0.3111
<i>LIQ</i>	2.9760	4.0069	0.2004	1.1380	1.7750	3.1971	36.7817
<i>BIG4</i>	0.6131	0.4871	0	0	1	1	1
<i>DIV</i>	0.3946	1.1621	0.00	0.05	0.18	0.35	20.00
<i>AGE</i>	8.2813	1.1084	2.6391	7.8364	8.5112	9.0344	9.7849
<i>OWN</i>	0.4438	0.1554	0.0228	0.3322	0.4452	0.5478	1.0000
<i>FOR</i>	0.0957	0.1314	0.0000	0.0116	0.0395	0.1268	0.8973
<i>BOARD</i>	18.8389	0.7203	16.8383	18.3427	18.7805	19.2706	20.9001
<i>EMP</i>	5.8244	1.3339	2.0794	4.9558	5.7203	6.4938	10.0782
<i>SALARY</i>	17.6755	0.2944	16.8983	17.4704	17.6616	17.8760	18.4789
<i>MK</i>	0.4910	0.5000	0	0	0	1	1

1) 변수설명

- PEN* : 순확정급여부채(=(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총자산)
- GETR* : 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이익
- CETR* : 법인세납부액/영업활동현금흐름
- SIZE* : log(매출액)
- LEV* : 부채/총자산
- OA* : 영업이익/총자산
- CFO* : 영업현금흐름/총자산
- LIQ* : 유동자산/유동부채
- BIG4* : BIG4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 DIV* : 현금배당율

- AGE : log(상장일 이후 일수)
- OWN : 대주주지분율
- FOR : 외국인지분율
- BOARD : log(임원 1인당 평균지급액)
- EMP : log(종업원 수)
- SALARY : log(종업원 1인당 평균급여)
- MK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면 1,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면 0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장시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에 따르면 순확정급여부채를 나타내는 PEN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보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GETR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은 코스닥시장보다 영업이익률이 낮고,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비중이 낮으며 유동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BIG4감사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금배당율이 높고, 상장된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대주주지분율 및 외국인지분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원 1인당 평균지급액, 종업원 수, 종업원 1인당 평균급여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상장시장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변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n=2,005)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n=1,934)		T-test 검정통계량	Wilcoxon 검정통계량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PEN	0.0146	0.0064	0.0173	0.0101	-4.06 ***	-7.87 ***
GETR	0.2189	0.2189	0.1889	0.1906	6.70 ***	10.78 ***
CETR	0.2415	0.1658	0.2282	0.1448	1.63	3.41 ***
SIZE	26.6885	26.5540	25.2376	25.1685	34.20 ***	31.28 ***
LEV	0.3519	0.3539	0.3228	0.3022	5.31 ***	5.68 ***
OA	0.0583	0.0477	0.0750	0.0646	-10.56 ***	-10.44 ***
CFO	0.0746	0.0645	0.0915	0.0809	-9.40 ***	-9.29 ***
LIQ	2.7522	1.5645	3.2081	2.0523	-3.59 ***	-9.97 ***
BIG4	0.7436	1.0000	0.4778	0.0000	17.76 ***	17.13 ***
DIV	0.5277	0.2000	0.2566	0.1200	7.48 ***	11.74 ***
AGE	8.6225	8.9154	7.9275	8.3031	20.67 ***	24.23 ***
OWN	0.4659	0.4800	0.4209	0.4136	9.20 ***	9.57 ***

변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n=2,005)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n=1,934)		T-test 검정통계량	Wilcoxon 검정통계량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FOR	0.1290	0.0673	0.0612	0.0213	16.86 ***	20.14 ***
BOARD	19.0320	18.9567	18.6387	18.6318	17.89 ***	16.01 ***
EMP	6.2789	6.2186	5.3533	5.3327	23.44 ***	23.25 ***
SALARY	17.7803	17.7858	17.5668	17.5533	24.49 ***	23.23 ***

1) 변수설명은 <표 2>와 같음.

2)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표 4>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순확정급여부채(PEN)와 유효법인세율(GETR)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EN과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는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PEN과 부채비율(LEV)의 상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PEN은 LIQ, BIG4, DIV, AGE, OWN 및 FOR과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동비율이 클수록,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을수록, 현금배당율이 높을수록, 상장기간이 길수록,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장시장을 나타내는 MK는 PEN과의 상관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될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상관관계분석결과(n=3,939)

	PEN	GETR	CETR	SIZE	LEV	OA	CFO	LIQ	BIG4	DIV	AGE	OWN	FOR	BOARD	EMP	SALARY
GETR	-0.0412 (0.0097)															
CETR	-0.0629 (0.0001)	0.2505 (0.0001)														
SIZE	-0.0779 (0.0001)	0.2018 (0.0001)	0.0539 (0.0007)													
LEV	0.2561 (0.0001)	0.0826 (0.0001)	-0.0824 (0.0001)	0.3594 (0.0001)												
OA	-0.0173 (0.2781)	0.0374 (0.0190)	0.0461 (0.0038)	0.0725 (0.0001)	-0.1440 (0.0001)											
CFO	0.0252 (0.1140)	-0.0219 (0.1696)	-0.3931 (0.0001)	0.0907 (0.0001)	-0.0401 (0.0119)	0.5959 (0.0001)										
LIQ	-0.1130 (0.0001)	-0.1203 (0.0001)	0.0028 (0.8617)	-0.3189 (0.0001)	-0.5540 (0.0001)	0.0238 (0.1346)	-0.0457 (0.0041)									
BIG4	-0.0633 (0.0001)	0.0835 (0.0001)	0.0291 (0.0677)	0.3399 (0.0001)	0.0401 (0.0118)	-0.0251 (0.1147)	-0.0159 (0.3176)	-0.0655 (0.0001)								
DIV	-0.0816 (0.0001)	0.0196 (0.2192)	0.0318 (0.0459)	0.2505 (0.0001)	-0.0444 (0.0053)	0.1748 (0.0001)	0.1184 (0.0001)	-0.0066 (0.6780)	0.1132 (0.0001)							
AGE	-0.0343 (0.0313)	0.0895 (0.0001)	-0.0107 (0.5032)	0.1940 (0.0001)	0.0726 (0.0001)	-0.2597 (0.0001)	-0.1744 (0.0001)	-0.0732 (0.0001)	-0.0065 (0.6824)	0.0093 (0.5617)						
OWN	-0.0555 (0.0005)	0.0205 (0.1980)	0.0519 (0.0011)	-0.0397 (0.0126)	-0.0651 (0.0001)	-0.1194 (0.0001)	-0.0960 (0.0001)	0.0598 (0.0002)	0.0876 (0.0001)	-0.0286 (0.0731)	-0.0457 (0.0041)					
FOR	-0.1205 (0.0001)	0.0764 (0.0001)	0.0246 (0.1228)	0.4717 (0.0001)	-0.0872 (0.0001)	0.2016 (0.0001)	0.1628 (0.0001)	0.0075 (0.6378)	0.2718 (0.0001)	0.2820 (0.0001)	0.1385 (0.0001)	-0.1761 (0.0001)				
BOARD	-0.0920 (0.0001)	0.0770 (0.0001)	0.0525 (0.0010)	0.5125 (0.0001)	0.0464 (0.0036)	0.1117 (0.0001)	0.0502 (0.0016)	-0.0661 (0.0001)	0.1901 (0.0001)	0.2098 (0.0001)	0.1249 (0.0001)	-0.1467 (0.0001)	0.3470 (0.0001)			
EMP	0.1065 (0.0001)	0.1892 (0.0001)	0.0401 (0.0118)	0.8325 (0.0001)	0.3337 (0.0001)	0.0773 (0.0001)	0.1157 (0.0001)	-0.3131 (0.0001)	0.2969 (0.0001)	0.2369 (0.0001)	0.1227 (0.0001)	-0.1117 (0.0001)	0.4348 (0.0001)	0.4310 (0.0001)		
SALARY	-0.0699 (0.0001)	0.0547 (0.0006)	0.0072 (0.6524)	0.4627 (0.0001)	0.0258 (0.1049)	0.0453 (0.0045)	0.0375 (0.0186)	0.0042 (0.7923)	0.2940 (0.0001)	0.2049 (0.0001)	0.1606 (0.0001)	-0.0222 (0.1628)	0.3472 (0.0001)	0.4201 (0.0001)	0.2415 (0.0001)	
MK	0.0646 (0.0001)	-0.1062 (0.0001)	-0.0260 (0.1032)	-0.4753 (0.0001)	-0.0843 (0.0001)	0.1664 (0.0001)	0.1485 (0.0001)	0.0569 (0.0004)	-0.2729 (0.0001)	-0.1166 (0.0001)	-0.3135 (0.0001)	-0.1449 (0.0001)	-0.2578 (0.0001)	-0.2730 (0.0001)	-0.3469 (0.0001)	-0.3627 (0.0001)

1) 변수설명은 <표 2>와 같음.  
2) 괄호안의 수치는 p값을 의미함.



## 2. 회귀분석

본 연구는 전기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 4>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유효법인세율을 나타내는 GETR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클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인세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법인세율과 순확정급여부채 간에 음(-)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고 있다.<sup>8)</sup>

<표 5> 회귀분석결과(n=3,939)

구분 변수	ETR = GETR <sub>t-1</sub>			ETR = CETR <sub>t-1</sub>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절편	0.0315	1.38	0.1663	0.0317	1.39	0.1633
ETR	-0.0071	-3.23 ***	0.0012	-0.0025	-1.78 *	0.0749
SIZE	-0.0095	-18.16 ***	<.0001	-0.0095	-18.24 ***	<.0001
LEV	0.0387	16.44 ***	<.0001	0.0383	16.12 ***	<.0001
OA	0.0163	1.98 **	0.0475	0.0196	2.27 **	0.0235
CFO	0.0130	1.94 *	0.0526	0.0069	0.87	0.3838
LIQ	0.0002	1.77 *	0.0763	0.0002	1.84 *	0.0658
BIG4	-0.0006	-0.81	0.4154	-0.0006	-0.84	0.3998
DIV	-0.0007	-2.62 ***	0.0088	-0.0007	-2.52 **	0.0119
AGE	0.0000	0.05	0.9586	0.0000	-0.15	0.8823
OWN	0.0005	0.25	0.8063	0.0006	0.28	0.7803
FOR	-0.0079	-2.66 ***	0.0079	-0.0080	-2.66 ***	0.0078
BOARD	-0.0012	-2.19 **	0.0283	-0.0011	-2.11 **	0.0350
EMP	0.0091	18.48 ***	<.0001	0.0091	18.42 ***	<.0001
SALARY	0.0105	7.23 ***	<.0001	0.0105	7.24 ***	<.0001
MK	-0.0018	-2.25 **	0.0245	-0.0017	-2.15 **	0.0314
수정 R <sup>2</sup>	0.2395			0.2380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1) 변수설명은 <표 2>와 같음.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SIZE는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가 클수

8) 본 연구의 분석에서 VIF의 최대값은 2.65로 나타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록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며,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할수록 정치적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tts 2003). 게다가 기업규모가 크다는 것은 종업원이 많으므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리 많은 적립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SIZE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LEV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 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CFO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업현금흐름이 클수록 퇴직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적게 납부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적립금 수준과 투자수준이 음(-)의 관련성을 보인다는 Rauh(2006)의 연구에 따르면 영업현금흐름에 따른 현금을 투자에 집중할 경우 적립금 수준이 낮아져 순확정급여부채는 증가할 수 있다. DIV는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이 나타남으로써 김상현(2015)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장시장을 나타내는 MK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높아 적립금을 많이 납부하여 부담을 완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추가분석

#### 가. 전기대비 증가액을 이용한 분석

종속변수인 PEN은 재무상태표의 계정으로 다기간동안 누적된 값이다. 전기까지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과소하게 납부하였다면 PEN은 큰 값이 된다. 그리고 당기에 많은 적립금을 납부하더라도 PEN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큰 값이 나타날 수 있다. 즉, 한 회계기간 동안의 의사결정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PEN을 전기대비 증가액으로 측정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종속변수의 측정방법에 대응되도록 독립변수들을 전기대비 증가액으로 측정한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만약  $\alpha_1$ 이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면 유효법인세율이 크게 증가할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유효법인세율이 크게 증가하여 법인세부담이 높을 경우 법인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begin{aligned} \Delta PEN_t = & \alpha_0 + \alpha_1 \Delta ETR_t + \alpha_2 \Delta SIZE_t + \alpha_3 \Delta LEV_t + \alpha_4 \Delta OA_t + \alpha_5 \Delta CFO_t \\ & + \alpha_6 \Delta LIQ_t + \alpha_7 \Delta BIG4_t + \alpha_8 \Delta DIV_t + \alpha_9 \Delta AGE_t + \alpha_{10} \Delta OWN_t + \alpha_{11} \Delta FOR_t \\ & + \alpha_{12} \Delta BOARD_t + \alpha_{13} \Delta EMP_t + \alpha_{14} \Delta SALARY_t + \alpha_{15} \Delta MK_t + \sum YR \\ & + \sum IND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연구모형 (2)}$$

전기대비 증가액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살펴보면 유효법인세율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Delta ETR$ 는 모두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효법인세율이 크게 증가할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효법인세율이 크게 증가하여 법인세부담이 높은 기업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6> 회귀분석결과(n=3,171)

구분 변수	$\Delta ETR = \Delta GETR_t$			$\Delta ETR = \Delta CETR_t$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절편	-0.0076	-4.26 ***	<.0001	-0.0078	-4.36 ***	<.0001
$\Delta ETR$	-0.0014	-1.70 *	0.0901	-0.0009	-1.86 *	0.0632
$\Delta SIZE$	0.0004	0.39	0.6998	0.0004	0.43	0.6697
$\Delta LEV$	0.0167	5.95 ***	<.0001	0.0164	5.86 ***	<.0001
$\Delta OA$	-0.0105	-1.89 *	0.0586	-0.0114	-2.06 **	0.0399
$\Delta CFO$	0.0041	1.52	0.1291	0.0057	1.97 **	0.0493
$\Delta LIQ$	-0.0001	-2.15 **	0.0320	-0.0001	-2.17 **	0.0298
$BIG4$	-0.0002	-0.62	0.5367	-0.0002	-0.56	0.5763
$\Delta DIV$	-0.0015	-2.37 **	0.0181	-0.0016	-2.44 **	0.0149
$AGE$	0.0006	3.36 ***	0.0008	0.0007	3.41 ***	0.0007
$\Delta OWN$	0.0046	0.91	0.3620	0.0045	0.89	0.3743
$\Delta FOR$	-0.0033	-0.80	0.4253	-0.0035	-0.83	0.4055
$\Delta BOARD$	0.0007	1.80 *	0.0714	0.0007	1.86 *	0.0636
$\Delta EMP$	0.0030	2.39 **	0.0167	0.0031	2.40 **	0.0164
$\Delta SALARY$	0.0008	0.61	0.5419	0.0007	0.57	0.5660
$MK$	0.0008	2.38 **	0.0174	0.0008	2.38 **	0.0174
수정 R <sup>2</sup>		0.0577			0.0579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1) 변수설명은 <표 2>와 같음.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나. 대주주지분율에 따른 분석

대주주지분율에 따른 법인세절감유인은 상반된 논리가 존재한다. 이익침해가설에 따르면,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하며, 외부주주의 감시 및 감독이 어렵다. 이로 인해 대주주는 법인세절감을 통해 얻은 자산을 사적편의 추구에 사용하기 쉽다. 그러므로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법인세절감유인이 높을 것이다. 반면, 이해일치가설에 의하면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가 일치하여 회계이익 증가를 통한 주가상승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즉, 회계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절감유인이 낮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선행연구들은 대주주지분율과 법인세절감유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선행연구는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법인세절감유인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Klassen 1997; 고윤성 등 2007; 손언승 등 2012). 반면 일부 선행연구들은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법인세절감유인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esai et al. 2007; 정용수 등 2011). 그리고 대주주지분율과 법인세절감유인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강정연과 김영철 2012; 권순창 등 2009, 홍영은 등 2009). 한편, 홍영은 등(2009)과 오정택과 김영화(2010)는 대주주지분율의 구간에 따라 대주주지분율과 법인세절감유인 간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법인세절감유인은 대주주지분율에 따라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주주지분율에 따라 법인세절감 수단이 차별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주주지분율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집단을 대주주지분율의 중위수에 따라 구분한다.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한다.

<표 7> 대주주지분율에 따른 회귀분석결과

Panel A. OWN≥중위수 (n=1,983)

구분 변수	ETR = GETR <sub>t-1</sub>			ETR = CETR <sub>t-1</sub>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절편	0.0162	0.50	0.6177	0.0154	0.47	0.6375
ETR	-0.0103	-3.16 ***	0.0016	-0.0028	-1.67 *	0.0959
SIZE	-0.0081	-11.33 ***	<.0001	-0.0081	-11.37 ***	<.0001
LEV	0.0411	12.47 ***	<.0001	0.0402	12.06 ***	<.0001
OA	0.0025	0.20	0.8391	0.0013	0.10	0.9182
CFO	0.0257	2.61 ***	0.0092	0.0278	2.82 ***	0.0049
LIQ	0.0002	2.05 **	0.0401	0.0002	2.08 **	0.0376
BIG4	0.0006	0.59	0.5567	0.0006	0.56	0.5761
DIV	-0.0019	-3.01 ***	0.0027	-0.0019	-2.99 ***	0.0028

Panel A. OWN≥중위수 (n=1,983)

구분 변수	ETR = GETR <sub>t-1</sub>			ETR = CETR <sub>t-1</sub>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AGE	-0.0001	-0.14	0.8852	-0.0001	-0.19	0.8491
OWN	0.0107	2.22 **	0.0266	0.0115	2.37 **	0.0177
FOR	-0.0079	-2.01 **	0.0446	-0.0080	-2.03 **	0.0425
BOARD	-0.0002	-0.28	0.7762	-0.0003	-0.42	0.6769
EMP	0.0087	13.09 ***	<.0001	0.0086	12.96 ***	<.0001
SALARY	0.0081	4.00 ***	<.0001	0.0083	4.06 ***	<.0001
MK	0.0001	0.13	0.8927	0.0000	0.04	0.9693
수정 R <sup>2</sup>	0.2565			0.2537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Panel B. OWN<중위수 (n=1,956)

구분 변수	ETR = GETR <sub>t-1</sub>			ETR = CETR <sub>t-1</sub>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절편	0.0277	0.85	0.3968	0.0274	0.84	0.4028
ETR	-0.0026	-0.85	0.3969	0.0005	0.28	0.7783
SIZE	-0.0117	-15.48 ***	<.0001	-0.0117	-15.54 ***	<.0001
LEV	0.0360	9.94 ***	<.0001	0.0361	9.95 ***	<.0001
OA	0.0379	3.29 ***	0.0010	0.0372	3.23 ***	0.0013
CFO	-0.0006	-0.07	0.9480	0.0003	0.03	0.9761
LIQ	0.0000	0.04	0.9657	0.0000	0.08	0.9376
BIG4	-0.0023	-2.22 **	0.0264	-0.0023	-2.20 **	0.0281
DIV	-0.0006	-1.83 *	0.0681	-0.0006	-1.81 *	0.0702
AGE	0.0001	0.29	0.7681	0.0001	0.23	0.8182
OWN	0.0001	0.02	0.9814	-0.0003	-0.05	0.9611
FOR	-0.0061	-1.22	0.2229	-0.0062	-1.23	0.2175
BOARD	-0.0020	-2.45 **	0.0142	-0.0020	-2.43 **	0.0151
EMP	0.0099	13.20 ***	<.0001	0.0099	13.17 ***	<.0001
SALARY	0.0149	7.01 ***	<.0001	0.0149	7.03 ***	<.0001
MK	-0.0051	-4.22 ***	<.0001	-0.0050	-4.18 ***	<.0001
수정 R <sup>2</sup>	0.2254			0.2251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1) 변수설명은 <표 2>와 같음.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표 7>의 Panel A는 대주주지분율이 대주주지분율의 중위수보다 크거나 같은 표본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Panel B는 대주주지분율이 증위수보다 작은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7>의 Panel A를 보면 ETR은 모두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클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법인세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법인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의 Panel B를 보면 ETR은 모두 유의한 회귀계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법인세부담에 따른 법인세절감유인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경우 외부주주의 압력이 강하고 외부주주의 감시 및 감독이 강화될 것이다. 강화된 감시·감독으로 인해 조세절감 부분을 사적편익추구에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법인세절감유인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론

법인세부담이 높을 경우 경영자는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이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회계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회계이익과 경영자 보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영자는 법인세부담과 같이 회계이익이 감소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세법에는 준비금, 충당금 등과 같이 회계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세무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부담만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확정급여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은 회계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세무이익만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세무이익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법인세비용만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채무인 확정급여채무와 퇴직급여를 위해 적립한 자산인 사외적립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며, 순확정급여부채(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값)를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인세부담이 높아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립금의 규모를 증가시킨다면 사외적립자산이 증가하여 순확정급여부채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미래의 법인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법인세부담이 높을 경우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증가시켜 법인세비용을 완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법인세율이 순

확정급여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때 본 연구는 법인세율을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다.

분석결과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부담이 클 경우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 규모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전기대비 증가액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이 크게 증가할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크게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한 기업이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많이 납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주주지분율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분석을 통해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집단만 법인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이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본 연구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에서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세무전략으로 활용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법인세절감으로 유보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집단에서만 법인세절감을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사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주주지분율이 높을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하고 외부주주의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보된 자원이 사적편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므로 유보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순확정급여부채를 통해 적립금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감사보고서의 주석 자료를 통하여 직접 퇴직급여 적립금의 규모를 측정하였을 경우에 비해 측정오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화함으로써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순확정급여부채의 전기대비 증가액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의 규모를 측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동시에 선택한 기업과 확정급여제도만을 선택한 기업으로 구분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동시에 선택한 기업과 확정급여제도만을 선택한 기업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논문편집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였습니다.

### 【 참고 문헌 】

- 강내철, 박성환, “조세동기에 의한 보수주의 회계선택이 이익분포 변형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4권 제3호, 2007, pp.39-66.
- 강정연, 고종권,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9권 제1호, 2104, pp.147-183.
- 강정연, 김영철,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2012, pp.37-67.
- 고운성, “기업특성에 따른 세무조정형태”,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1호, 2008, pp.63-94.
- 고운성, 김지홍, 최원욱,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2007, pp.9-40.
- 고운성, 이진훤, “접대비지출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2011, pp.101-132.
- 고종권, 박희진,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회피”, 『회계저널』 제26권 제2호, 2017, pp.83-115.
- 권순창, 강영욱, 김창훈, 김정환,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국제회계연구』 제26집, 2009, pp.189-210.
- 김문태, 조인선, “법인세부담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비용화 유인”,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4호, 2006, pp.1-23.
- 김상헌, “사외이사특성,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이 퇴직급여부채의 인식유인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61집, 2015, pp.79-100.
- 김정교, “현금흐름개념과 재무비율 유형”, 『회계학연구』 제19권 제1호, 1984, pp.125-155.
- 김정연, “퇴직연금 도입 이후 기업의 분기별 이익관리에 대한 실증분석”, 『상업교육연구』 제28권 제4호, 2014, pp.289-305.
- 김정연, 안일준, “퇴직급여제도 정책변경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4호, 2010, pp.77-103.
- 김진희, “K-IFRS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9권 제4호, 2014, pp.191-214.
- 김창범, 변설원, 최종서, “스톡옵션 발행기업의 이익조정과 주식시장 반응”,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5호, 2007, pp.2093-2119.
- 박종일, 김경호,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7권 제2호, 2002, pp.81-115.
- 박종일, 전규안,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제34권 제1호, 2009, pp.171-206.
- 백원선, 최관, “이익조정과 법인세 최소화동기”, 『회계학연구』 제24권 제1호, 1999, pp.115-139.
- 손언승, 양동훈, 이상철, 김갑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절감활동과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2012, pp.385-419.
- 심상규, 김지범,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3호, 2008, pp. 233-258.
- 심충진, 권해숙, “유효법인세율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5권 제3호, 2017, pp.159-181.
- 오정택, 김영화, “기업소유구조와 조세회피”, 『조세연구』 제10권 제2호, 2010, pp.191-220.
- 위준복, 김문태, “법인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량적 발생액의 조정”, 『회계와 감사연구』 제42호, 2005, pp.1-25.
- 윤상규, 조광희, 김영준, “퇴직급여채무 산출시 재량적 결정 요인 분석”, 『기업경영연구』 제21권 제5호, 2014, pp.1-17.
- 이영란, 한종수, 김상미, “보험수리적 가정의 재량적 결정”, 『회계저널』 제25권 제4호, 2016, pp.177-207.
- 정용수, 이윤원, 조용언,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2011, pp.9-40.
- 조석희, “퇴직급여부채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3집, 2014, pp.173-189.
- 최동춘, 서정록,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 『회계연구』 제18권 제1호, 2013, pp.1-27.
- 최원욱, 김상일, 권미진, “퇴직보험 사용에 따른 절세 행위 및 기업 특성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3호, 2010, pp.105-130.
- 홍영은, 박종국, 이계원, “경영자지분율에 따른 기업 조세전략의 차별적 특성”, 『세무학연구』 제26권 제4호, 2009, pp.125-147.
- Almeida, H., M. Campello, and M. S. Weisbach, “The Cash Flow Sensitivity of Cash”, *Journal of Finance* Vol. 59, 2004, pp.1777 - 1804.
- An, H., Y. W. Lee, and T. Zhang, “Do Corporations Manage Earnings to Meet/Exceed Analyst Forecasts? Evidence from Pension Plan Assumption Changes”,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Vol. 19, 2014, pp.698-735.
- Comprich, J., L. Mills, and A. Schmidt, “Bias in Quarterly Estimates of Annual Effective Tax Rates and Earnings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34 No. 1, 2012, pp.31-53.
- Desai, M., A. Dyck, and L. Zingales, “Theft and Tax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84, 2007, pp.591-623.
- Dhaliwal, D. S., C. A. Gleason, and L. F. Mills, “Last-Chance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Tax Expense to Meet Analyst's Forecas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21 No. 2, 2004, pp.431-459.
- Franzoni, F., and J. M. Marin, “Pension Plan Funding and Stock Market Efficiency”, *Journal of Finance*

- Vol. 61 No. 2, 2006, pp.921-956.
- Han, S., and J. Qiu, "Corporate Precautionary Cash Holding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 13 No. 1, 2007, pp.43 - 57.
- Healy, P. M., "The Effect of Bonus Schemes on Accoun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7, 1985, pp.85-107.
- Hsu, A. W., C. Wu, and J. Lin, "Factors in managing actuarial assumptions for pension fair value: Implication for IAS 19", *Review of Pacific Basin Financial Markets and Policies* Vol. 16 No. 1, 2013, pp.1-23.
- Klassen. K. J., "The Impact of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 72 No. 3, 1997, pp.455-474.
- Mande, V., R. File., and W. Kwak, "Income Smoothing and Discretionary R&D Expenditures of Japanese Firm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7 No. 2, 2000, pp.263-302.
- Rauh, J., "Investment and Financing Constraints: Evidence from the Funding of Corporate Pension Plans", *Journal of Finance* Vol. 61 No. 1, 2006, pp.33-71.
- Salah, I. B., and H. Smaoui, "Determinants of Actuarial Choices for Defined-Benefit Pension Plans: Canada Evidence", *International Review of Business Research Papers* Vol. 10 No. 2, 2014, pp.192-207.
- Wang, F. A., and T. Zhang, "The Effect of Unfunded Pension Liabilities on Corporate Bond Ratings, Default Risk, and Recovery Rate", *Review of Quantitative Finance and Accounting* Vol. 43, 2014, pp.781-802.
- Watts, R.,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ccounting Horizons* Vol. 17 No. 3, 2003, pp.207-221.

#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nd Net Defined Benefit Liability

Lee, Myong Gun\* / In, Chang Yeo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net corporate benefit liability decreases as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 the previous period increas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companies that have announced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by adopting a defined benefit plan since 2012.

manager has the incentive to increase the book income to maximize compensations. In addition, the manager also has the incentive to reduce tax expenses when the corporate tax burden is large. However, both the increment of the book income and the reduction of tax expenses are difficult to achieve due to the conformity between the book income and the taxable income. There are systems that would enable reducing tax expenses without affecting the book income such as reserves and allowances. Therefore, managers can use such systems to reduce tax expenses without reducing the book income. The reserves paid for post-employment benefits according to defined benefit plans correspond to the foregoing. That is, the reserves for post-employment benefits are not treated as costs, but can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whether managers use the reserves for post-employment benefits as a means to reduce tax expenses.

According to the defined benefit retirement plan, the manager should estimate the liabilities incurred by the provision of service by employees at the end of each year, and pay the reserves to the pension fund to cover the liabilities. In addition, the manager should recognize the plan assets, which are the assets reserved for defined benefit obligations and post-employment benefits that are liabilities to employees and disclose the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defined benefit obligations less plan assets). Therefore, if the manager increases the reserve for post-employment benefits to reduce tax expense, the plan assets will increase so that the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will decrease.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 the previous period, the smaller the net defined benefit liability. In addition, the analysis using the increase amount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shows the same result as this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n that in cases where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 the previous period is high, the manager uses reserves for

---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Primary Author (E-mail: leemg@hanyang.ac.kr)

\*\* Ph.D. candidate, Dept. of Accounting,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rebieth@hanyang.ac.kr)

payment of post-employment benefits as a means to reduce tax expense.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nalyzes whether the reserves for payment of post-employment benefits are utilized as a means to reduce corporate tax burdens.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presents the tax strategies utilized by enterprises that adopted the defined benefit system.

Key Words :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Net Defined Benefit Liability, Tax Expense, Defined benefit plan